

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

2025. 8. 29.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장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신청

제2조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) 「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」(이하 “「학위수여 규정」”이라 한다.)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. [개정 2015. 9. 24., 2020. 9. 1.]

1.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(종합시험, 영어, 제2외국어)에 합격한 자
2. 각 대학(원)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당해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
3. 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(과정 수료후 석사 4년, 박사 6년)을 경과하지 않은 자
4. 「학위수여 규정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자 [개정 2015. 9. 24., 2020. 9. 1.]
5. 「학위수여 규정」 제11조제5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자 [개정 2015. 9. 24., 2020. 9. 1.]
6.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
7. 기타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각 대학(원)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자

제3조(신청 및 심사대상자 결정) ① 학위논문(실적심사)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,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간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속 학과(부)장을 경유하여 대학(원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논문심사원 또는 논문심사 요구서

2. 삭제<2025. 8. 29.>

3. 삭제<2025. 8. 29.>

4. 논문심사위원 명단 [개정 2010. 12. 10.]
5. 심사용 청구논문(석사과정 3부, 박사과정 5부)
6.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[개정 2010. 12. 10.]
7. 기타 각 대학(원)에서 필요한 서류

② 각 대학(원)의 장은 제1항의 학위논문심사 서류를 제출한 자 중에서 논문심사 대상자를 결정 후 그 결과를 1학기는 4월말, 2학기는 10월말까지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장 논문지도교수

제4조(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) ① 「학위수여 규정」 제5조제4항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는 학생 1인당 1명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2명 이내의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. [개정 2015. 9. 24., 2020. 9. 1.]

1. 학제적 성격의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
2. 국내외 대학 또는 기관과 공동학위나 복수학위 수여협정을 체결한 경우
3. 「학위수여 규정」 제5조제6항에 따라 타 학과(부)·전공의 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하는 경우
4. 그 밖에 각 대학(원)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「학위수여 규정」 제5조제3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거나 타 학과(부)·전공의 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을 소속 학과(부)장 또는 전공주임에게 제출해야 하며, 학과(부)장 또는 전공주임은 이를 대학(원)장에게 보고하여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

한다. [신설 2020. 9. 1.]

[제목개정 2020. 9. 1.]

제5조(논문지도교수 자격) 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[개정 2009. 12. 2., 2008. 11. 13., 2009. 7. 7., 2015. 9. 24. 2020. 12. 2., 2021. 10. 27., 2024. 7. 5.]

1. 석사과정은 본교 전임교원, 겸무교원 및 기금교원으로 한다.
2. 박사과정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, 겸무교원 및 기금부교수 이상의 기금교원으로 한다. 다만, 작성 논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(원)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, 기금조교수도 할 수 있다.
3. 의과대학장은 의과대학 임상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중 교육 및 연구성과가 탁월한 자를 의과대학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. [신설 2021. 10. 27.]
4. 대학(원)장은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빙석좌교수를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.

② 삭제 [2020. 12. 2]

③ 공동논문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, 기금교원, 겸임교원, 초빙교원, 특임교원, 임상교원, 객원교원, 외래교원, 석좌교수, 국내·외 학술교류협정 대학 및 기관의 교원으로 하되 자격은 제1항에 준한다. [개정 2015. 9. 24., 2020. 4. 3., 2020. 12. 2, 2021. 10. 27.]

제6조(논문지도교수 선정시기 등) ① 「학위수여 규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입학 후 2개 학기 이내에서 각 대학(원)장이 정한다. 다만,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한다. [개정 2015. 9. 24., 2020. 9. 1.]

② 기타 논문지도교수에 관한 선정절차, 학생배정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각 대학(원)의 장이 정한다.

제3장 논문심사위원

제7조(논문심사위원의 자격) ① 「학위수여 규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[개정 2015. 9. 24., 2020. 9. 1., 2020. 12. 2.]

1. 본교의 전임교원, 기금교원, HK교원, 비전임교원
2.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(부)장의 추천을 받은 자

② 「학위수여 규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[개정 2015. 9. 24., 2020. 9. 1., 2020. 12. 2.]

1. 본교의 전임교원, 기금교원, HK교원, 비전임교원
2.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가. 타교 교원으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
 - 나.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근무한 자
 - 다. 기타 위 가·나에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각 대학(원)의 장이 인정하는 자

제8조(논문심사위원의 추천 및 구성) ①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제출자 1명에 대하여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석사과정은 3명 이상, 박사과정은 5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학과(부)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(원)장에게 추천한다. [개정 2020. 9. 1.]

② 「학위수여 규정」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각 대학(원)의 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 제출자 1명에 대하여 석사과정은 3명 이상(위원장, 부위원장, 1명 이상의 위원), 박사과정은 5명 이상(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3명 이상의 위원)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 [개정 2020. 9. 1., 2020. 9. 2.]

③ 각 대학(원)의 장은 1명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 [개정 2020. 9. 1.]

④ 박사과정의 논문심사 위원 선정시 반드시 교외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 [개정 2020. 9. 1.]

⑤ 각 대학(원)의 장은 심사위원 위촉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을 변경·위촉하고자 할 경우 최종논문심사 종료 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.

⑥ 각 대학(원)의 장은 제2항 및 제5항의 위촉결과를 박사과정에 한하여 1학기는 4월말, 2학기는 10월말

까지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심사위원장) 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논문지도교수, 명예교수 및 교외전문가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.

③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
④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, 심사결과를 심사요지와 함께 소정 기일 내에 학과(부)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(원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장 논문심사 및 평가방법 등

제10조(논문요지 발표, 예비심사 및 본심사) ① 각 대학(원)의 장은 학위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각 학과(부)장 또는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논문요지 발표회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학위논문의 예비심사는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에 한하여 각 학과(부)장 또는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예비심사에 있어서 학위논문 제출자의 연구태도, 논문주제의 타당성, 취급방법의 타당성, 연구 성과 등을 심사하여 당해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을 판정한다.

④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각 대학(원)장이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.

⑤ 학위논문 본 심사에서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한다.

⑥ 학위수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위논문 제출자에게 참고논문 또는 부분·역본·모형·표본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논문심사 및 구술고사 평가방법) ① 석사학위 논문은 “A(심사위원 전원 찬성)”, “B(심사위원 2/3 찬성)”, “C(심사위원 1/3이하 찬성)”으로 평가하되, 논문심사 합격은 논문성적 “B”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은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.

③ 구술고사는 논문의 최종심사시에 시행하며,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석사과정은 평균 60점 이상, 박사과정은 평균 70점 이상(심사위원 4/5이상이 70점 이상이어야 함)이어야 한다.

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(원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각 대학(원)의 장은 최종 심사결과를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학기는 7월말, 2학기는 1월말까지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은 자체 학사일정에 따라 매학기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논문심사기간 연장) ① 「학위수여 규정」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대학(원)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박사과정 논문심사자에 한하여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. [개정 2020. 9. 1.]

② 논문심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자는 반드시 심사기간 연장 승인 받은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.

③ 논문심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자의 다음 학기 논문심사대상자 관련 서류 제출은 생략한다. 다만, 심사위원 변경시 각 대학(원)의 장은 그 결과를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논문심사결과에 따른 다음 학기 심사 절차) 학위논문심사 판정결과(“철회”, “심사기간연장”, “불합격”)에 따른 다음 학기 논문심사진행절차는 별표 1과 같다.

제14조(문서의 보관) 각 대학(원)의 장은 학위논문심사 관련 문서를 매학기 학위논문심사 종료 후 자체적으로 보관하되,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제5장 학위논문 제출 및 공표

제15조(학위논문 제출 및 미제출자 처리) ① 학위논문 심사에서 합격 받은 자(이하 “학위논문심사 합격자”라 한다)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에서 수정 보완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학위논문의 작성방법, 규격 및 형식은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③ 학칙 제89조(대학원과정의 졸업)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논문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서명 또는 날인한 최종 인증된 학위논문의 전자파일을 당해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각 대학(원)장이 정하는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5. 9. 24., 2020. 12. 2.]
-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대학(원)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된 자에게는 학위 논문을 제출한 학기에 학위를 수여한다.
- ⑤ 학위수여대상에서 유보된 자의 다음 학기 논문심사대상자 등록서류 제출은 생략한다.
- ⑥ 각 대학(원)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처리결과를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⑦ 제3항의 제출논문은 개명으로 인해 논문 제출자의 학적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(원)장이 중앙도서관장에게 요청하여 교체할 수 있으며, 명백한 오탈자, 편집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기한 내 정오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. [신설 2021. 1. 5.]
- ⑧ 각 대학(원)의 장은 자체 보관용으로 학위논문 심사 합격자에게 별도의 학위논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16조(학위논문의 공표) ① 「학위수여 규정」 제27조에 따라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취득 후 1년 이내에 단행본 발간, 학회지 게재, 정기간행물 게재, 국제학술지 게재, 학술세미나에서 발표, 기타의 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5. 9. 24., 2020. 9. 1.]

-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위취득자가 특허출원예정, 군사상 비밀,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위논문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(원)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공표를 유보할 수 있다. [개정 2009. 5. 14.]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위논문 공표 유보를 받은 학위취득자가 추가로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(원)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서 공표 유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[개정 2009. 5. 14.]
- ④ 각 대학(원)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공표유보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중앙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[개정 2009. 5. 14.]

제6장 학위수여 및 취소

제17조(해당학과 학위와 다른 종별 학위수여) ① 「학위수여 규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당학과와 다른 종별의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대학(원)장은 대학(원) 내 학과간 또는 대학(원)간 협의를 거친 후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[개정 2020. 9. 1.]

- ② 해당학과와 다른 종별의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논문심사위원 위촉시 학위종별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(원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20. 9. 1.]
- ③ 제2항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대학(원)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과와 다른 종별의 학위에 대한 논문심사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논문심사대상자 명단 및 논문심사위원 선정결과 보고서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아야 한다. [개정 2009. 12. 2., 2020. 9. 1.]

제18조(논문심사 합격자중 수료요건 등 미충족자 처리) ① 논문심사 합격자중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78조(과정이수 학점 등), 제83조(취득학점의 인정) 및 기타 각 대학(원)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학위수여대상 탈락자로 간주한다. [개정 2015. 9. 24., 2020. 9. 1.]

- ② 각 대학(원)의 장은 제1항의 학위수여 탈락자에 대하여 해당 논문심사결과를 철회조치하고, 다음 학기에 소정의 절차를 다시 취하도록 한다.
- ③ 각 대학(원)의 장은 제2항의 처리 결과를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9조(학위의 취소) ①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학위취득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학위수여 취소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각 대학(원)의 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의하여야 한다.

③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학위수여를 취소한다.

제7장 논문심사료

제20조(논문심사료 징수 및 수당 지급) ①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5조에 따라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 논문심사 수당을 지급하고자 논문심사 대상자에게 논문심사료를 징수한다. [개정 2020. 9. 1.]

② 논문심사료의 1인당 징수액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.

③ 논문심사 수당은 학위 논문심사를 마치고 심사요지서와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에 지급한다.

④ 각 대학(원)장은 논문심사위원 중 교외전문가에 대하여 논문심사 수당이외에 지역별로 일정금액을 여비명목으로 법인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 [개정 2020. 9. 1.]

제21조(논문심사료 환불) ① 논문심사대상자가 논문심사료 납부 후 부득이 논문심사진행이 어려워 철회를 요청한 경우 각 대학(원)의 장은 논문심사위원 위촉 전에 한하여 논문심사료를 환불하여 줄 수 있다. [개정 2020. 9. 1.]

② 제1항의 환불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각 대학(원)의 장은 교무과로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. [개정 2020. 9. 1.]

제22조(논문심사료 징수 면제)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심사 대상자중 직전학기에 심사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논문심사료 징수를 면제한다. 다만 심사위원 교체시 새로이 선정된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수당은 각 대학(원)에 배정된 법인회계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. [개정 2020. 9. 1.]

② 제15조제4항에 따라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1개 학기 연장받은 자는 다음 학기 논문심사료 징수를 면제한다. [개정 2020. 9. 1.]

③ 경영전문대학원, 국제대학원(국제개발정책학과) 및 의학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에게는 논문심사료 징수를 면제한다. 다만,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논문심사위원들에게 일정금액의 논문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[개정 2009. 12. 2., 2011. 3. 31.]

부칙 <제00016호, 2024. 7. 5.>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00017호, 2025. 8. 29.>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